

해양·수산관련 법령 제·개정 주요내용(2012년 하반기)

1.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03호, 2012. 07. 06

- 산적액체위험물 및 인화성 액체물질 운송 선박의 폭발 및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탱크 등 밀폐구역에 진입할 때에는 산소 및 인화성가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검지 장치를 휴대토록 하기 위함

2. 고속선 기준 일부개정

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18호, 2012. 07. 11

- 무선통신 담당자의 자격기준이 「선박안전법」 제2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선통신원의 자격별 정원표를 삭제함

3.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23호, 2012. 08. 01

- 연안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인 선박의 내항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, 보유선박보다 저선령인 선박이나 이중 선체인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15년

기준을 적용받는 등 획일적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, 적정선복량 유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령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사들의 안정적 영업유지 및 해상안전을 도모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4.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34호, 2012. 10. 24

-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「해운법」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차도선형 여객선에 대하여도 선령 15년 이상이 되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함

5.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일부개정

■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46호, 2012. 08. 14

- 문서의 보존기간 및 사용 용어를 법령과 통일 시키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”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
 - 어선원부 및 어선등록신청의 관계서류 보존기간 : 10년 → 2년
 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→ 특별

-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- 법인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, 법인등록번호
- 법인의 명칭,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

6. 유·도선의 규격 및 시설·설비기준 일부 개정

▣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-141호, 2012. 08. 23
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
- 안전검사 실시 기관에 ‘특별자치시장(도지사)’ 추가함

7.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

▣ 대통령령 제24097호, 2012. 09. 10

-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
 - 지금까지는 낚시로 치어나 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·채취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, 앞으로는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을 준용하여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동물 등은 포획·채취가 금지되도록 함
 -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낚시도구에 함유·잔류된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
 - 납이나 비소 등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되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, 판매, 판매 목적 제조·수입 등이 금지되도록 함

- 수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낚시인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호우, 대설, 해일 등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
 - 기상상황 악화 등 위급상황 발생 우려 시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이나 공제
 - 낚시터업자는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,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
 -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게는 위험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,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 등에게는 안심하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낚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준 마련
- 낚시어선 신고 시의 확인
 -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정함
 - 낚시어선에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설비 및 소화설비를 비치토록 함
 - 낚시어선에 해양환경 보호 및 낚시인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토록 함
 - 낚시어선에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핸드레일을 설치토록 함

8. 어선설비기준 일부개정

▣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199호, 2012. 09. 12

- 「어선법」개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 규정 개정
 - 어선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어선운항 정보의 종류 규정
 - 어선의 식별번호, 위치, 속력, 침로, 시각 등
- SOLAS, COLREG 및 LSA CODE 등 국제 협약(코드 포함) 개정 사항 등 반영
 -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요건을 신설
 - 긴급이탈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구명부환의 무게를 4킬로그램으로 규정
 - 구명조끼의 성능기준 개정(협약 개정사항 수용)
 - * 「선박설비기준」 요건과 동일
 - 구명정, 구명뗏목, 강하식탑승장치 등의 정원 계산 시의 어선원의 기준체중을 75kg에서 82.5kg으로 변경
 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중 A60 방화문 트렁크의 내부치수 (가로, 세로 각 800mm 이상)를 규정
 - 승강설비 중 도선사용 승강기에 대한 요건 삭제
- 기타의 자 거주시설의 종류 변경
 - 항행예정시간과 관계없이 침대, 의자석 또는 바닥면적 등을 지정
- 기타의 자실 높이 개선
 - 2.0미터 이상 → 1.6미터 이상(비상시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)
- 집어등(LED 등 제외) 아래에는 LPG 용기 보관 금지

- 다만, LPG 용기보호용 차양막 또는 보호용캡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가능

- 레이더반사기 설치 면제 어선을 확대
 - 야간항행을 하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레이더 반사기 설치 면제어선 확대

〈레이더반사기 설치대상〉

- 총톤수 20톤 미만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어선
- 총톤수 30톤 미만의 합성수지제 어선 및 목선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(’12. 01. 26)에 따라 모든 어선에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함

9.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일부개정

▣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199호, 2012. 09. 12

- 어선 톤수 측정업무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,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개정 사항 및 관련법령 등의 규정을 수용하여 「어선 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」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
- 「어선법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동 요령의 목적 수정
- 「어선법 시행규칙」에 반영되어 있는 중복 사항 삭제
 -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을 삭제
 -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에 관한 대행 요건 삭제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문구 수정 등 용어를 명확히 함
- 「어선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사항 수용

- 어선의 총톤수 측정장소에 관한 요건인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13조가 삭제('09. 12. 14)됨에 따라 동 요령에서도 삭제
- 어선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삭제
 - 총톤수 측정신청과 어선등록신청을 공단에 동시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 삭제
 - 총톤수 등의 측정 후 어선등록신청의 이첩에 관한 사항 삭제
- 현재 사용하지 않는 어선톤수측정번호 부여 방법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
 - 톤수계산서 작성 시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톤수 측정번호 부여방법 삭제
 -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 등의 반환 및 분실에 관한 신고현황 기록·관리 사항 삭제
- 총톤수 등의 측정을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
- 총톤수 등의 측정 및 개측 신청현황을 함께 관리토록 서식 변경
 - 별지 제1호 서식 : 총톤수 등의 측정 및 개측 신청
 - 별지 제2호 서식 :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 발급 신청
- 검사원의 총톤수 측정업무 구분을 명확히 함
- 「선박 톤수 측정 요령」 및 「어선톤수측정업무 지침」의 “어선톤수측정해설도”를 수용하여 어선 총톤수 등의 측정과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
 - 별표 4 : 어선총톤수측정방법 신설
 - 별표 5: 어선톤수측정해설도 신설
- 어선톤수계산서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, 총톤수 부분측정에 관한 주의사항 신설
- 톤수측정 자료의 관리기간과 총톤수 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 보고 횟수를 명확히 함

- 톤수측정 자료의 관리기간을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후 어선원부 보관기간과 일치시킴
- 「선박안전법」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와 동일하게 반기에 1회 보고

10.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62호, 2012. 09. 27

- 국제협약 개정 사항을 수용 반영
 - 고체식구멍땀목(외각에 FRP재, 내부에 Plastic 부력재를 가지는 것)의 침수시험 시 정원뿐만 아니라 의장품도 같은 수준 이상의 중량물로 대체하여 시험 가능토록 추가
 - 기존 : 정원 → 변경 : 의장품 및 정원
 - 팽창식 및 복합식 구멍땀목의 기실시험(기실에 사용되는 재료, 팽창시스템 및 부품에 시험)의 재료시험 시험항목 삭제
 - 구멍줄발사기의 줄 인장시험 항목 신설
 - 줄은 2KN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져야 함
 - 발연부신호의 발연농도시험 및 연색시험 시 Munsell 표기법 준용 내용 수정 및 연기농도 판정기준 신설(연기 방출 시 농도는 70% 이상)
 - 8.75 YR 6/14 → 8.75 R 6/14
 - 도선사용사다리의 외관검사 시 구조 및 모양 검사, 발판, 버팀목 및 사이드로프 등의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신설 및 강도시험 시 사이드 로프 절단시험 신설
 - 방수복의 강도시험 시 리프팅 루프 시험방법 신설
 - 리프팅 루프는 3,200N 이상의 힘을 가하여

- 시험
 - 적층용 수지액의 각 항목의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
 - 점도 판정기준은 ± 20 퍼센트, 주형판의 연실율 판정기준은 평균치 2.5 퍼센트 이상, 주형판의 흡수율 판정기준은 평균치 80mg 이하로 각각 변경
 - 적층판의 굽힘탄성계수는 평균치 530.3kg/mm² 이상, 적층판의 인장강도 평균치는 8.15kg/mm² 이상, 인장탄성계수는 647kg/mm² 이상으로 각각 변경
 - FRP 선박에 사용되는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 신설

- 2012. 7. 1 이후 인도되는 선박
 - 조문 재배치
 - 도장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앞쪽, 시험기관의 신청 및 지정에 대한 사항은 뒤쪽으로 조정 배치
 - 조선소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표, 작업기록 및 검증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
 - 도장시스템의 적합증서 발급 시 도료 등의 시험비용은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2항 별표 16의 산출기준 준용토록 함
 - 유조선의 화물탱크용 보호도장의 시험절차 신설
 - 도장시스템의 적합증서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절차 등 삭제
 - 보호도장시스템의 기본요건에 도장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, 도장의 형식, 2차 표면처리 방법 등 원유선 화물탱크 관련 내용 신설
 - 블록조립 검사 시 건조도막두께(DFT) 측정 확인 규정 신설

11. 선체보호도장 기준 일부개정

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63호, 2012. 09. 27

- 기준 적용대상 추가
 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5,000톤 이상의 원유운반선의 화물창 내의 내부 부재, 접근설비, 브래킷, 구조물 등의 일부 적용
 - 2013. 1. 1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
 - 2013. 7. 1 이후 용골거치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
 - 2016. 1. 1 이후 인도되는 선박
- 적용시기별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부칙에 신설
 -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의 해수 전용 평형수탱크 및 길이 150미터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공간
 - 2008. 7. 1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
 - 2009. 1. 1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

12.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지침 제정

▣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-4636호, 2012. 09. 28

- 불법어업 및 무조업선 근절, 자원의 적정관리와 어업질서확립, 감척사업의 효과 도모를 위해 동시 어업허가제 도입
- 동시어업허가 신청대상·시기·방법, 현장확인 절차 및 방법, 신청시기 일실 등에 대한 처리, 전자허가증 발급 방법 등을 정함

구 분	허가척수	허가기간
근해어업	3,029척	'13. 1. 1~'17. 12. 31, 5년
연안어업	44,045척	'14. 1. 1~'18. 12. 31, 5년
구획어업	6,423척	'15. 1. 1~'19. 12. 31, 5년

* 먼허어업은 2016년 이후 확대추진 예정

13.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

▣ 농림수산물부령 제309호, 2012. 10. 05

-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규격, 내용 및 설치장소 요건을 정함
- 낚시터업의 허가, 변경허가,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, 등록, 변경등록 및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을 정함
 - 낚시터의 허가, 변경허가, 허가갱신, 등록, 변경등록 및 유효기간 연장 시 낚시터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
-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등을 정함
 - 낚시어선 신고 시 첨부 서류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
-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을 정함
-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을 정함
-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의 내용 등을 정함

14.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

▣ 국토해양부령 제523호, 2012. 10. 26

-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

마련함

-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심사표와 심사항목별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,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배점 150점 중 120점 이상인 자를 인증대상자로 함
-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정함
 -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공정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
-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위탁 절차를 정함
 -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을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,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

15.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

▣ 국토해양부령 제524호, 2012. 10. 31

- 선원의 훈련,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(STCW)의 부속서가 개정됨에 따라 해기사면허를 갱신한 경우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조정하고, 선박직원의 교육 과정에 기관실자원관리교육, 선교자원관리교육, 전자해도장치교육 등을 신설하며, 유조선 직무

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, 해기사시험에 응시할 때에 제출하던 서류를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기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, 해기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

16.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

▣ 대통령령 제24173호, 2012. 11. 12

-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(魚道)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내수면어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·범위 및 방법과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17.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정

▣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-276호, 2012. 11. 22

-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계산 방법을 정함
 - 수상시설물이 있는 낚시터와 수상시설물이 없는 낚시터를 구분하여 최대수용인원 계산 방법을 정함
-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요건을 정함

- 낚시터 규모에 따라 구멍부환, 소화기, 구멍약품 비치 수량 및 요건을 정함
- 낚시인의 편의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요건을 정함
 - 낚시터의 규모에 따라 화장실 등 위생설비 및 쓰레기통에 대한 수량 및 요건을 정함
-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요건을 정함
 - 낚시터 관리시설, 방송시설, 낚시터 관리선의 설비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함
- 수상시설물의 선체 요건을 정함
 - 부력체 및 상부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, 부력체와 상부구조물의 연결법, 수상시설물의 부력 등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정함
- 수상시설물의 배수설비 요건을 정함
 - 수상시설물의 배수구 및 흡입관 요건을 정함
- 수상시설물의 계선 및 계류설비 요건을 정함
 - 수상시설물 규모에 따른 계류설비의 수량 및 요건을 정함
 - 수상시설물의 이동 시 필요한 예인설비 등의 요건을 정함
- 수상시설물의 전기설비 요건을 정함
 - 수상시설물에 사용하는 주전원, 비상전원 및 축전지 성능 등을 정함
 - 정박등, 조명, 비상조명등에 대한 수량 및 요건 등을 정함
- 수상시설물의 안전설비 요건을 정함
 - 수상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구멍조끼, 구멍부환, 소화기에 대한 수량 및 요건 등을 정함
- 그 밖에 수상시설물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요건을 정함

- 수상시설물의 냉·난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로 등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함
- 수상시설물의 편의에 관한 시설·장비 요건을 정함
- 수상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화장실 등 위생 설비, 쓰레기통, 낚시터 관리시설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치의 요건 등을 정함

18.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▣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0호, 2012. 11. 23

- 어도(魚道)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내수면어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의 보관 방법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의 전문기관에의 위탁방법 및 어도를 설치한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명령이행 통보서의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19.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

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32호, 2012. 11. 26

-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현행 도선사용 사다리, 현측사다리의 설치 요건 등 정비 필요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(12. 01. 26)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에도 석면사용이 전면

금지되어 있어, 관련 규정 정비 필요

- 국제항해선박은 '11. 1. 1부터 석면 사용금지
- 도선사용사다리 손잡이 설치요건, 사이드 로프 강도요건 및 윈치 릴 설치 위치요건 신설
- 현측사다리의 경사각 및 너비요건,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설치요건 신설
- 수밀조인트 및 단열장치 등 일부 선박용 부품에 대한 석면 사용금지 예외규정 삭제

20.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정

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44호, 2012. 11. 28

- 現 중·소형 플레저보트(24m 미만, 약 70~80톤)에 적용하던 검사기준을 개인용 대형 플레저보트(24m 이상)까지 부분적 확대
 - 중·소형 플레저보트에 적용하는 선체요건, 완성검사 및 수입 선박용품 사용 규정 등을 동일하게 적용
-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 및 24미터 미만 상업용 플레저보트에 대해 만재흡수선 표시 생략 함
 -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: 여객 13명 미만 승선 하는 비사업용 선박
 - 상업용 플레저보트 :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른 사업용 유선
- 플레저보트의 외관과 어울리는 수입 선박용 물건 사용 확대 및 별도 성능시험 면제함
 - 외국정부 등이 승인한 수입 선박용품(구명뗏목, 선등, 기적 및 컴퍼스) 사용 확대 및 별도의 성능시험 면제함
- 선체강도 확인기술 발전에 따른 선체 완성검사 대상 확대

- 선박길이 15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
→ 선박길이 15미터 이상 비사업용 플레저보트
- 플레저보트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요건 개선
 - 플레저보트의 외관 및 이용자의 갑판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창구등의 코밍높이 및 폐쇄장치 요건 완화
-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대하여 FRP 등 다양한 재질의 연료유 탱크 및 레저선박용 닻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
 - 플레저보트에 주로 사용하는 FRP, 폴리에틸렌계 등 다양한 재질의 연료유 탱크 및 레저선박용 CQR 앵커 및 블루스 앵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24미터 미만 상업용 플레저보트에 대하여도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와 같이 선체구조요건 개선 및 수입 선박용품 등 사용 확대함
 - 플레저보트용 닻·FRP 등 다양한 재질의 연료유 탱크 인정, 출입구 등 코밍 높이 개선 및 직접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항해용구, 구멍뚫목, 현창 등 수입 선박용품 사용 허용

21.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

■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2호, 2012. 11. 29

- 어업활동 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를 얻 근해어업 허가증에 수록·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적회로(Integrated Circuit)칩을 내장한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신설하는 한편, 행정안전부의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서식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개선함

22.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21호, 2012. 12. 17

- 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코밍은 항해구역별 표에 따른 계산 값 이상, 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코밍 설치를 면제
 - 조임장치 등 폐쇄장치로 풍우밀 유지 및 사수 시험하여 누설이 없는 경우, 적당한 구조강도 보유, 수면보다 위쪽에 창구등이 위치, 쉽게 접근 가능하고, 항해 중 폐쇄 등 코밍 설치를 면제함
-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선원실의 높이를 앞기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도 가능토록 개선함
-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에 설치하는 항해용구(선등, 기적, 컴퍼스) 등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적합하다고 인정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

23. 해운법 일부개정

■ 법률 제11598호, 2012. 12. 18(시행 '13. 03. 19)

- 우리나라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는 정부가 그 국가의 선박운항 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해 서만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으나,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도 대항 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대항조치의 실효성을

강화하려는 것임

24. 수산업법 일부개정

▣ 법률 제11566호, 2012. 12. 18(시행 '13. 12. 19)

-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,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 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, 국민 중심 원칙허용 인·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(遊漁場)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
-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
 - 연안의 바닥에 서식하는 어종을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 포획 허가 대상 어종 외의 다른 어종도 일정 비율까지 혼획할 수 있도록 혼획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
 -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어선의 선복량 제한 및 어구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.
-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
 - 농림수산물부 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구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
-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·허가 방식으로 전환함

-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어장의 지정을 하도록 함

25.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잠정 기준 제정

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76호, 2012. 12. 26

- 음식찌꺼기 및 화물잔류물 외의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
 - 종전 해양 배출이 가능하였던 부유성 화물 보호재료 및 포장재료와 쓰레기 배출금지
 - 폐기물기록부 서식 개정
 -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대상선박 확대(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 →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)
-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배출규제 신설
 -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및 허용 값에 적용토록 함
 - 2013. 01. 01 이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국제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(계산대상 : 11개 선종, 허용 값 적용 : 7개 선종)
 - * 산적화물선(散積貨物船), 가스운반선, 유조선, 컨테이너선, 일반화물선, 냉동화물운반선, 겸용선, 여객선, 로로화물선(차량운반선), 로로화물선(로로화물수송유니트), 로로여객선(11개 선종)
 - * 산적화물선(散積貨物船), 가스운반선, 유조선, 컨테이너선, 일반화물선, 냉동화물운반선, 겸용선(7개 선종)
 -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에너지효율 검사증서를 비치토록 함
 - 국제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

하는 선박

26.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▣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0호, 2012. 12. 27

-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수산자원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27.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개정

▣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82호, 2012. 12. 27

- 「선박평형수(平衡水) 관리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취소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
- 독립시험기관,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 용어 신설
- 형식승인계획서의 사전 확인 절차 마련
- 형식승인시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, 동형선박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기준 및 절차 신설
-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절차 및 변경승인시 형식승인시험 기준 마련
- 개발자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
-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

-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국제해사기구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 절차와 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절차 마련
-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독립시험기관 지정
- 과학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
-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독립시험기관 지도·감독 근거 마련
- 독립시험기관의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 시험결과 정보공개 사이트 운영·관리 근거 마련
- 육상시험시설의 사용, 검정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을 정함
-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증서 서식 개선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(www.kst.or.kr) 제·개정 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.

「선박안전기술공단」은 고객의 현장에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.

검사제도 등에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-50

갯벌타워 13층

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검사실

☎ 032-260-2288~9 / Fax. 032-260-2235

e-mail : it@kst.or.kr